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4호 2018. 2. 5.(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60호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 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등 일괄정비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26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하동군 조례 제226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하동군 조례 제2263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조례 29
○ 하동군 조례 제2264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하동군 조례 제2265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4
○ 하동군 조례 제2266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하동군 조례 제2267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39
○ 하동군 조례 제2268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 .. 43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8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7
○ 하동군 규칙 제118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2
○ 하동군 규칙 제1182호	하동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 60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11호	공유수면 접사용 허가고시(하동군수) 65
○ 하동군 고시 제2018-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 2018-113호	2018년도 하동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공고 68
----------------------	------------------------------------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0 호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4조(「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지득한” 을 “알게 된” 으로 한다.

제5조(「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자원부고시(2006-12호)” 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로 한다.

제6조(「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7조(「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묘지·납골당” 을 “묘지·봉안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보건사회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로,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 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 로 한다.

별표 기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참·조퇴” 를 “지각·조퇴” 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 를 “지각·조퇴” 로 한다.

제13조(「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4조(「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표 4 중 “국민안전처”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7조(「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을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8조(「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19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62조의2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사리도” 를 각각 “자갈도” 로 한다.

제21조(「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 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 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한다.

제22조(「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u> 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④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행정안전부</u> ----- ----- -----.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안전행정부장관</u> 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 -----.

제2조(「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	제5조(「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공설봉안당 ----- ----- -----.

<p>다.”를 “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p>	<p>----- ----- -----.</p>
--	-----------------------------------

제3조(「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생략)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u>행정자 치부</u>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 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 격으로 한다. ⑦ (생략)</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행정안 전부</u>----- ----- ----- -----. ⑦ (현행과 같음)</p>

제4조(「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u>지득한 기밀</u>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 3. ~ 5. (생략)</p>	<p>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현행과 같음) 2 ----- <u>알게</u>-----<u>된</u> ----- -- 3. ~ 5. (현행과 같음)</p>

제5조(「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u>산업자원부고시(2006-12호)</u>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산업통상자원부고시</u> ----- ----- ----- ----- ----- ----- ----- ----- ----- -----.

제6조(「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u>행정자치부장관</u> 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제3조(지정) ① (생 략)</p> <p>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u>행정자치부</u>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p>	<p>-----.</p> <p>제3조(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행</u></p> <p><u>정안전부</u> -----</p> <p>-----</p> <p>-----.</p>
---	--

제7조(「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u>행정자치부장관</u>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p> <p>-----</p> <p>-----</p> <p>-----</p> <p><u>행 정 안 전 부 장 관</u></p> <p>-----</p> <p>-----.</p>

제8조(「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p>	<p>제2조(정의) -----</p>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전통상점가”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8. -----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

제9조(「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점용·사용료의 산정) ① (생 략)	제26조(점용·사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u>건설교통부장관</u> 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 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	일 반 의
월 791,000원 이하	월 710,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제4조(장려수당) -----

----- 묘지·봉안
당-----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	일 반 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 보건
부 지 부 장 관

제11조(「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
지 않는다.

4. ~ 6. (생 략)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안
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생 략)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숙박비 (10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 4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
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
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

3. -----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하
여”-----.

4. ~ 6. (현행과 같음)

7. ----- “행정안전부장
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 “행정안
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
-----.

8. (현행과 같음)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숙박비 (10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제1호	(현행과 같음)				
제2호					

※ (현행과 같음)

비고 : 1.

----- 행정부안전
장 관 -----

비밀번호를 <u>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보안 업무 규정」</u>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u>행정안전부</u> ----- ----- -----
---	--

제14조(「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u>미래창조과학부장관</u>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 ----- -----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u>행정자치부장관</u> 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다.	-----.
----	--------

제15조(「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u>소방방재청장</u> 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 <u>행정안전부 장관</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u>국민안전처장관</u> 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u>국민안전처장관</u> 과 재난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

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군청사) 사고	재정관리과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담당업무	비고
총괄조정관	(생략)	
통제관	(생략)	
담당관	(생략)	

③ -----

----- 행정안전부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담당업무	비고
총괄조정관	(현행과 같음)	
통제관	(현행과 같음)	
담당관	(현행과 같음)	

구분	담 당 업 무	비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생략)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 (생략)	안전 총괄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생략) ...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 (생략)	행정과

구분	담 당 업 무	비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현행과 같음)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 (현행과 같음)	안전 총괄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행정 5. 안전부장관 ----- ...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 (현행과 같음)	행정과

제17조(「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② (생략)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토교통부장관----- ----- -----

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
 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 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p>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p> <p>----- <u>행정안 전부장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p> <p>----- <u>행정안전부장관</u> -----</p>

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

-----.

③ -----

----- 행정
안전부장관-----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안전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전문신설 2015.11.23.]

----- 행
정안-----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

----- 행정안
전부장관-----

제20조(「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생략)</p> <p>② <u>사리도</u>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p>	<p>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자갈도</u>----- ----- -----</p>

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갈도-----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략)</p> <p>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u>국토해양부령</u>(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 <u>농림수산식품부령</u>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p>	<p>제3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국토교통부령</u> ----- ----- <u>해양수산부령</u> ----- ----- -----.</p>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녹차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u>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 ----- ----- -----.</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1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을 “일자리창출 및 지식
재산·지역경제발전”으로 한다.

제9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경제수산과</p> <p>가. <u>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u>에 관한 사항</p> <p>나. ~ 마. (생략)</p> <p>5.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u>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u>--</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5. ~ 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7. ~ 15. (생략)</p>	<p>제9조(소관사무)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u></p> <p>8. ~ 16. (현행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2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6명” 을 “65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3명” 을 “644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56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3명</u></p> <p>2. (생략)</p> <p>[별표 3]</p> <p>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분청</th> <th rowspan="2">의회 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u>65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u>625</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5급</td> <td></td> <td>3</td> <td>2</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34</td> <td>12</td> <td>2</td> <td>1</td> <td>4</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계</td> <td></td> <td><u>58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분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u>656</u>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u>625</u>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계		<u>587</u>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57명</u>----- ----- .</p> <p>1. ----- <u>644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분청</th> <th rowspan="2">의회 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u>65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수</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u>62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5급</td> <td></td> <td>3</td> <td>2</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34</td> <td>12</td> <td>2</td> <td>1</td> <td>4</td> <td>2</td> <td>1</td> <td>12</td> </tr> <tr> <td>6급 이하계</td> <td></td> <td><u>588</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td> <td></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분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u>657</u>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u>626</u>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계		<u>588</u>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분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u>656</u>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u>625</u>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계		<u>587</u>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분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u>657</u>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u>626</u>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계		<u>588</u>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3 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안전차단기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는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4 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를 “지명위원회업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임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 ----- ----- -----</p>
<p>제2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간사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2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명위원회업무 ----- ----- ----- -----</p>
<p>제3조(임기) ① (생략)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3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촉 해제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5 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

월 이상인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 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6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준수사항) <u>제16조에 따라 유</u> <u>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u> <u>· 제공하여야 한다.</u> 2. <u>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u> <u>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u> 3. <u>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u> <u>하여야 한다.</u> 4. <u>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u> <u>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u> <u>을 이행하여야 한다.</u> 	<p>제17조(준수사항) <u>제16조에 따라 유</u> <u>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u> <u>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u> <u>준수하여야 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7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10일” 을 “15일”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 ③ (생 략)</p> <p>④ 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8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 기간은 지정게시대 이용범위 확 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연 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게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p>	<p>제18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 ----- ----- ----- 15일 ----- -----. ----- -----.</p>
<p>② (생 략)</p> <p>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p> <p>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p> <p>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68 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현금구좌” 를 “현금계좌” 로 한다.

제5조 중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에서” 를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에서”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u>옥외광고정비기금</u>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u>옥외광고정비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제4항에 따른 <u>옥외광고사업 수익금</u> 중 <u>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u> 2.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17조에 따른 <u>수수료</u> 3.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20조에 따른 <u>과태료</u> 4.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10조의3에 따른 <u>이행강제금</u> 5. ~ 7. (생략)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p>	<p><u>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 ----- ----- <u>옥외광고발전기금</u>----- ----- ----- -----.</p> <p>제2조(기금의 재원) <u>옥외광고발전기금</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2. 법 제17조에 따른 <u>수수료</u> 3. 법 제20조에 따른 <u>과태료</u>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u>이행강제금</u> 5. ~ 7. (현행과 같음)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p>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 5. (생략)

<신설>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③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현금계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1. ~ 3.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80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제수산과장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농촌진흥과장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개정 2016.1.1., 2017.1.6., 2018.2.5>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 수산 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4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업무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수립 추진
	나.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1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공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5 전월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8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개정 2014.9.2, 2016.1.1., 2017.1.6., 2018.2.5>

성과명	분장사무	
농촌 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4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5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6	농가민박 육성 및 관리
	7	마을 가꾸기 사업
	8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2	벤처농업 육성
	3	식품산업 육성지원
	4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5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의장비 보급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9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성과명	분장사무	
농촌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진 흥 과 장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특산물의 가공 지원
	4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5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관리
	6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0%;">실과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제수산과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td> </tr> </table>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0%;">실과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h> </tr> <tr> <td rowspan="1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진흥과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귀농인 관리 및 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민회 육성 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교육 훈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경영 개선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td> </tr> </table>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과장	가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0%;">실과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제수산과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td> </tr> </table>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0%;">실과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분장사무</th> </tr> <tr> <td rowspan="2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진흥과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일자리 창업교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td> </tr> </table>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과장	가	지식재산 및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과장	가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나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농촌일자리 창업교육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7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8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다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마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바	농특산물의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81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57	292	68	57	9	23	13	22	173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626	288	68	32	9	23	11	22	173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4	82	19	9	3	5	4	9	53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10	2						1	7
	숙기		1						1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4	4							
	시설		16	9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허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2	33	5	2		2	3	40
	행정	14	7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7	1		1					5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3	4		2					7
	행정·해양수산·시설	5	3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4	1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3		3						
사무운영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사 업소	상하수도사 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99	50	2	6	1	14		2	24
	행정	10	9				1			
	사회복지	20	7						1	12
	환경	2	2							
	공업·시설관리	7					7			
	해양수산	1	1							
	보건	4					4			
	운전	3	1							2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7	2		3					2
	행정·시설·방호	14	14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1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화공운영	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56	292	68	56	9	23	13	22	173	총 계		657	292	68	57	9	23	13	22	173
일반직	일반직 계	625	288	68	31	9	23	11	22	173	일반직	일반직 계	626	288	68	32	9	23	11	22	173
	(생략)											(현행과 같음)									
	9급 소계	98	50	2	5	1	14	-	2	24		9급 소계	99	50	2	6	1	14	-	2	24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 농업	6	2	-	2	-	-	-	-	2		행정· 농업	7	2	-	3	-	-	-	-	2
(생략)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82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5.10.15., 개정 2017.1.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읍면	리	마을	비고(세부지역)
하동읍	홍룡리	떡점마을	밤골
	두곡리	서제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읍내리	연산마을	
화개면	탑 리	가탄마을	백혜
	용강리	모암마을	판교
악양면	미점리	미동마을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매계리	노전마을	
	정서리	주암마을	
	정서리	상신마을	
	신대리	상신대마을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관 리	율곡마을	
	동산리	영신마을	
횡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학 리	개인마을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성평리	신덕마을	
	대덕리	잔너리마을	
금남면	대치리	대치마을	진구지
	진정리	금오마을	
	계천리	계항마을	
	덕천리	상삼천마을	
	덕천리	하삼천마을	
금성면	궁향리	객길마을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송원리	화포마을	
	양포리	양일(밭꾸미)마을	
	안심리	안심마을	
	관곡리	반석마을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지례리	가락마을	
북천면	사평리	사평마을	배안골
	직전리	이명마을	이명골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	
옥중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퇴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내회신
	법대리	법대마을	가야골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0.8km이상이므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 3조 관련)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 3조 관련)					
읍 면	리	마을	비고 (세부 지역)	읍 면	리	마을	비고 (세부 지역)		
하동읍	흥흥리	먹점마을		하동읍	(현행과 같음)				
	두곡리	서재마을			읍내리	연산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방골		탑 리	가탄마을	백혜		
			(신 설)	용강리	모암마을	판교			
화개면	(신 설)			(현행과 같음)					
약양면	미점리	미동마을		약양면	(현행과 같음)				
	신흥리	하신흥마을			정서리	주암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정서리	상신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신대리	상신대마을			
	매계리	노전마을			(현행과 같음)				
			(신 설)	적량면	(현행과 같음)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적량면	(현행과 같음)				
	관 리	울곡마을			동산리	영신마을			
			(신 설)	(현행과 같음)					
횡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횡천면	(현행과 같음)				
	애치리	애치마을			고전면	(현행과 같음)			
	애치리	온동마을				대덕리	잔너리마을		
	학 리	개인마을					(현행과 같음)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현행과 같음)					
	성평리	신덕마을		(현행과 같음)					
			(신 설)	금남면	(현행과 같음)				
금남면	대치리	대치마을	진구지	금남면	(현행과 같음)				
	진정리	금오마을			금성면	(현행과 같음)			
	계천리	계항마을				진교면	(현행과 같음)		
	덕천리	상삼천마을					관곡리	반석마을	
덕천리	하삼천마을		(현행과 같음)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현행과 같음)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진교면	(현행과 같음)				
	송원리	화포마을			양보면	(현행과 같음)			
	양포리	양월(발꾸미)마을				사평리	사평마을	배안골	
	안심리	안심마을					직전리	이명마을	이명골
			(신 설)	(현행과 같음)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현행과 같음)					
	지례리	가락마을		(현행과 같음)					
북천면	(신 설)			(현행과 같음)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		(현행과 같음)					

옥종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외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내회신
		(신 설)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
까지 거리가 1km이상으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
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옥종면	(현행과 같음)		
	법대리	법대마을	가야골

※ -----
----- 0.8km -----
-----.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1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1
	055-880-2114	614-83-00025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장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51-10(구), 303-22(구), 884-1(구)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53㎡

(또는

㎡)

목적

하동 신역 연결도로

기간

영 구

점용·사용의 유형

구거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 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 동 군 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년 월 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 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제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5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85-27	2018 0131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1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79-65	2018 0131	2007 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24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489-11	2018 0131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764-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583	2018 0131	2009 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12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25-50	2018 0131	2007 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2길 6-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2길 6-10	2018 0131	2009 0302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6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평1길 9-1	2018 0131	2007 0618	상평이라는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7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동천길 54-42	2018 0131	2007 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에 동천이라는 옛지명을 합성하여 술상동천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38-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1길 18	2018 0131	2009 0302	전도라는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89-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165-1	2018 0131	2009 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12	2018 0131	2009 0302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18-113호

2018년도 하동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공모

하동군에서는 2017년도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1.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개요

-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 : 5 대
 - 접수기간 : 2018. 2. 5.(월) 10:00 ~ 보급 물량 소진 시까지
 - 보급차종 : 전기 자동차 8종 (붙임 1 참조)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하동군에 전기차 판매사항 및 접수처 등을 통보한 전기차 제작·판매사의 차량
- < '18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만원)

판매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테슬라	닛산
차종	아이오닉	쏘울	레이	SM3	i3	볼트EV	모델S	LEAF
								

2.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 구입비 보조 기준 : 보급대수 제한 없음

- 기존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추가 구매 가능

□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

-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 **최대 18백만원**(국비 최대 12, 지방비 6) 차등 지원

제작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테슬라	닛산
차량명	아이오닉	쏘울	레이	SM3	i3	볼트EV	모델S	LEAF
보조금	1,719~1,727	1,644	1,306	1,439~1,617	1,407~1,691	1,800	1,800	1,449

※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

- ① 개별소비세 : 최대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② 교 육 세 : 최대 6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③ 취 득 세 : 최대 2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충전기 구매·설치 보조금

- 충전기 구매·설치 보조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지원
- 완속 충전기(스탠드형) 구입 보조금 : **최대 4백만원**(국비, 차등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완전개방			부분개방			비공용 (기)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기 이상	
보조금	400	350	300	320	280	230	최대150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및 스탠드형 등을 신청할 경우 150만원 지원(정액지원)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신청할 경우 전용 콘센트 설치비를 포함하여 90만원 지급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신청할 경우 50만원 지원(정액지원)

※ 공용으로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콘센트 설치비는 40만원/개. 최대 5개까지 지원,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등)는 1.5만원/개, 최대 100개까지 지원

※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693)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

▪ 참고사항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환경부전기차충전소 통합포털 사이트(ev.or.kr)에 게시 예정

3.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

- 2018년도 하동군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신청일 전일**까지
 - ①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 ②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③ 하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등기부등본(지사, 대리점, 공장 등)을 통한 소재지
확인

□ 신청자격 (필수조건)

- ① 전기차 제작·판매업체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계약서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③ 하동군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 등록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 ① 개 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원 공동명의 등록 시),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②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 ※ 전기차 판매점 :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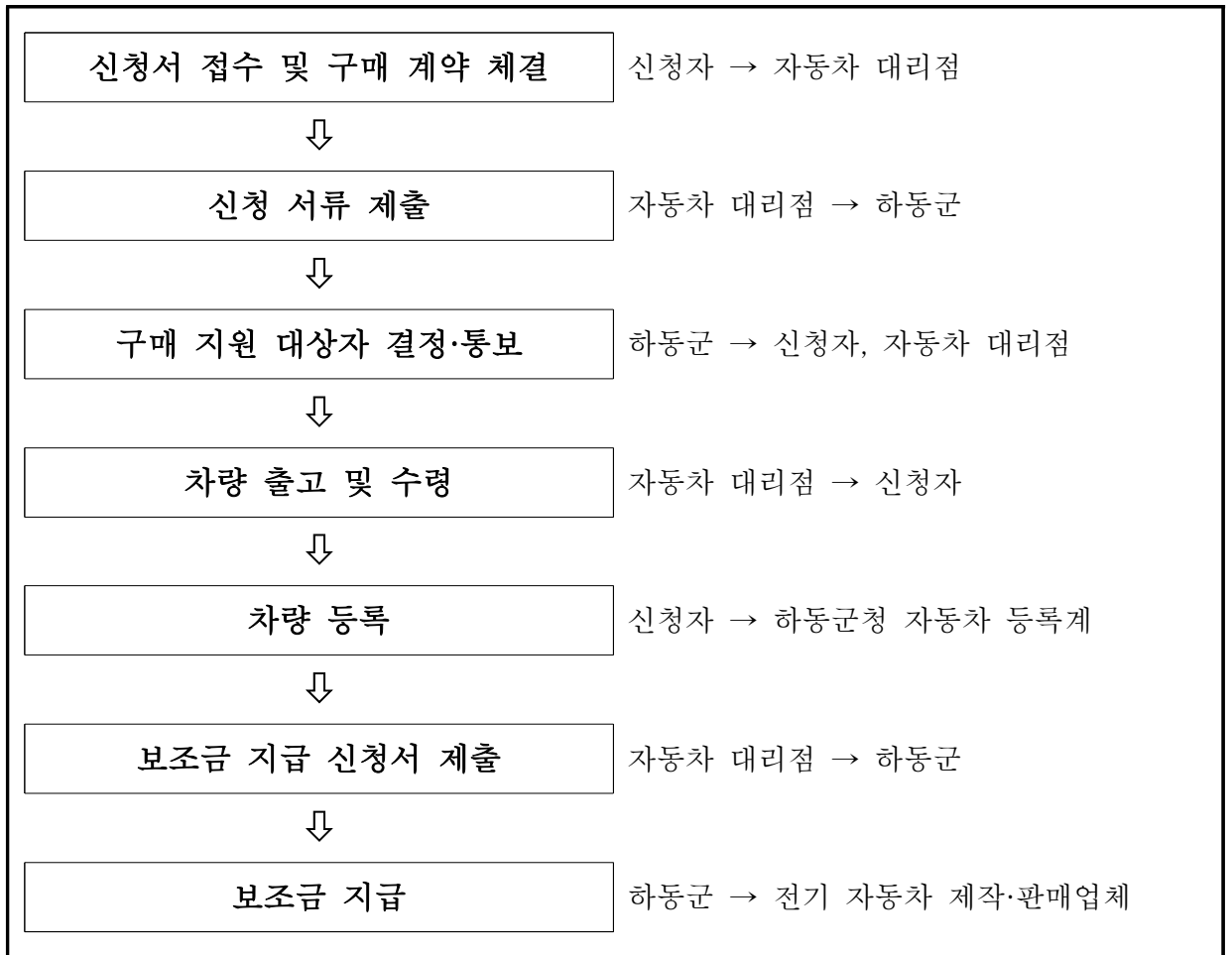
<업체별 전기자동차 접수 지정 대리점 현황>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르노삼성
하동지점 (055-883-6681)	하동지점 (055-884-5591)	사천지점 (055-853-3344)
BMW코리아	닛산 창원범한모터스	한국GM 쉐보레
진주지점 (055-748-7301)	창원지점 (055-252-0500)	광양지점(061-791-2581)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신청서가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전기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하동군청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담당자 이메일(myday8@korea.kr)로 발송하여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으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이후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4. 특이사항

- 신청서류를 접수한 이후 차종, 연식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 ※ 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 관내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전기차를 1개월 이내 신청자가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지원은 취소됩니다.

5.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942 ~4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32-590-369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55-880-2568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붙 임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2. 전기 자동차 구매 신청서

[붙임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kwh)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상온(20~30°C)	저온(-7°C)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727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719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644
	RAY EV	91	69.3	16.40	1,306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617
	SM3 Z.E ('17)	135	83.5	26.64	1,4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691
	i3 ('17)	132	75.5	18.80	4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8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8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8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800
닛산	LEAF	132.8	85.5	23.76	1,449

※ 차량별 성능, 판매가격, 할인 유무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대리점과 협의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년 월 일
(인)

하동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성명 : 년 월 일
(인)